

부속서 Ⅱ
제12조에 규정된 아이슬란드의 유보

아이슬란드

분야	모든 분야
하위분야	
현행법령	민간 유한회사에 관한 법률 제138조/1994, 공공 유한회사에 관한 법률 제2조/1995, 비거주자의 기업 투자에 관한 법률 제34조/1991
유보내용	민간 유한회사 또는 공공 유한 회사의 설립자 과반수는 아이슬란드 또는 기타 유럽경제지역(EEA) 회원국에 거주해야 한다. 상무부 장관은 이러한 제한으로부터의 면제를 부여할 수 있다. 민간 유한회사 또는 공공 유한회사의 경영자(들)와 적어도 이사회 의 절반은 아이슬란드 혹은 기타 EEA 회원국에 거주해야 한다. 상무부 장관은 이러한 제한에 면제를 부여할 수 있다.
목적 또는 동기	이사회와 경영진 과반수의 법적 근거가 아이슬란드 사법권 내에 있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아이슬란드

분야	모든 분야
하위분야	
현행법령	부동산의 소유와 사용권한에 관한 법률 제19조/1966년, 비거주자의 기업 투자에 관한 법률 제34조/1991년
유보내용	소유권과 사용이 투자가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부동산의 투자와 연계되어 있지 않는 한, 아이슬란드의 시민과 아이슬란드의 법인 및 기타 EEA 회원국의 시민과 법인만이 아이슬란드의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다. 이 조항은 만약 리스의 지속기간이 3년을 초과할 경우 부동산의 임대차에도 적용된다. 이러한 제한은 적어도 5년 이상 아이슬란드에 거주해온 비 EEA 시민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무부 장관은 이러한 제한에 면제를 부여할 수 있다.
목적 또는 동기	외국의 가능한 초과수요에 기인한 부동산 가격의 변동이 주택과 별장의 국내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아이슬란드

분야	어업
하위분야	고기잡이, 고래잡이
현행법령	아이슬란드 경제구역 내 외국선박의 어획과 어류가공에 관한 법률 제22조/1998, 비거주자의 기업 투자에 관한 법률 제34조/1991, 고래잡이에 대한 법률 제26조/1949
유보내용	아이슬란드의 통제를 받는 아이슬란드 시민과 아이슬란드 법 인만이 아이슬란드 경제구역에서 어업을 하도록 허용된다. 동조항은 포경업에도 적용된다.
목적 또는 동기	어류와 어류제품이 국가 외화소득의 절반 가까이를 이루는 아이슬란드에 있어서 어업의 상대적인 경제적 중요성과 동시에 아이슬란드의 어류 자원으로부터 지속적인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한 아이슬란드의 결정이다. 아이슬란드의 어류 자원의 보존에 관한 통제와 감독은 아이슬란드의 사법권 하에 있어야 한다.

아이슬란드

분야	어업
하위분야	어류가공
현행법령	비거주자의 기업 투자에 관한 법률 제34조/1991
유보내용	아이슬란드의 시민과 아이슬란드의 법인만이 아이슬란드에서 어류가공업에 종사하는 기업을 소유하고 경영할 수 있다. 여기서 어류가공업이란 냉동, 염장, 건조 및 초기에 어류와 어류제품을 보존하기 위한 기타 공정을 의미하며, 해동과 육류가공을 포함한다. 이 유보는 2차 어류가공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목적 또는 동기	어류 가공업에 대한 유보는 어업과 포경업 분야에 있어서 통제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부분이다. 어업이 외화 획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아이슬란드에 있어서 어업의 상대적인 중요성과 더불어 어류 비축량으로부터 꾸준한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한 아이슬란드의 결정이기도 하다. 아이슬란드의 어류 비축량의 보존에 관한 통제와 감독은 아이슬란드의 사법권 하에 있어야 한다.

아이슬란드

분야	어업
하위분야	어류 경매
현행법령	어류의 경매에 관한 법률 제123조/1989
유보내용	아이슬란드의 시민과 아이슬란드의 법인만이 아이슬란드에서 어류 경매에 종사하는 기업을 소유하고 경영할 수 있다.
목적 또는 동기	어류 경매에 관한 유보는 어업과 포경업 분야에 있어서 통제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부분이다. 어류와 어류제품이 국가 외화소득의 절반 가까이 구성하는 아이슬란드에게 있어서 어업의 상대적인 경제적 중요성과 어류 비축량으로부터 지속적인 산출량을 유지하기 위한 아이슬란드의 결정이다. 아이슬란드의 어류 비축량의 보존에 관한 통제와 감독은 아이슬란드의 사법권 하에 있어야 한다.

아이슬란드

분야	항공업
하위분야	항공 운수
현행법령	비거주자의 기업 투자에 관한 법률 제34조/1991
유보내용	아이슬란드의 시민과 법인, 그리고 기타 EEA 회원국가의 시민과 법인만이 항공운수에 종사하는 기업의 지분을 49% 이상 소유할 수 있다.
목적 또는 동기	소규모 국내 시장에서 광범위한 서비스의 필요가 특정 규제 및 자국 통제를 요구

아이슬란드

분야	에너지
하위분야	에너지 생산과 분배
현행법령	비거주자의 기업투자에 관한 법률 제34조/1991
유보내용	아이슬란드의 시민과 법인, 그리고 기타 EEA 회원국가의 시민과 법인만이 개인의 가정용 사용이 아닌 목적으로 수력발전과 지열 에너지를 이용할 권리를 소유할 수 있다. 이는 전력 생산과 분배에 종사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에도 적용된다.
목적 또는 동기	어류 비축량을 제외하고, 수력과 지열 에너지는 아이슬란드의 가장 중요한 천연 자원이다. 그 사용은 허가와 공동 생산협정을 통해 집중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전력 생산과 분배는 상당 부분 공공 독점기업으로서 운영되는 공익사업이다.